

제18조의4(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)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,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\[개정 2013. 7. 11.\]](#)

1.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
2.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
3. 화물 취급 요령
4.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

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,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. [\[신설 2013. 7. 11.\]](#)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[제목개정 2013. 7. 11.]

제18조의5(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)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(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)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6. 6. 30., 2019. 6. 28.\]](#)

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6. 6. 30., 2019. 6. 28.\]](#)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운전면허 사항 및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,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장이 발행한 것만을 말한다)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9. 6. 28.\]](#)

[전문개정 2013. 7. 11.]

제18조의6(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)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.

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,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. [\[신설 2013. 7. 11.\]](#)

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및 이수자를 결정하여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격자 및 이수자를 발표하고, 합격자 및 이수자에게 합격 사실 및 이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3. 7. 11., 2019. 6. 28.\]](#)

④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의 일시·장소·방법·과목 및 그 밖에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. [\[개정 2013. 7. 11.\]](#)

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[\[신설 2013. 7. 11., 2019. 6. 28.\]](#)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[제목개정 2013. 7. 11.]

제18조의7(교육과목 등) 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[\[개정 2019. 6. 28.\]](#)

1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
2.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
3.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
4. 자동차 응급처치방법
5.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